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비례보상주의 근거와 불평의 해소

I. 머리말

비례보상주의는 각국의 보험계약법 또는 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론적인 정당성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험에 있어서 이 비례보상주의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들의 이해가 결핍되어 있어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례보상주의가 보험료정산이라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청약받을 때에 피보험물건에 대한 가액의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고, 또한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PR을 게을리하여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계약이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취득에 수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가액평가(18조 1항)가 정부에 의하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보험현상에 의한 비례보상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대국민 PR을 위하여 비례보상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김 병 기
<동국대 교수. 경영학 박사>

제공하고자 한다.

상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실손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한다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납득시키기 어려우며 보다 체계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II. 비례보상의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에 대한 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일부보험이라 한다. 손해(火災) 발생시에 이같은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같은 비례보상주의 또는 비례보상의 원칙(principle of average)이 상법 제674조(일부보험)에 규정되어 있고, 비례보상주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법률상의 규정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비례보상주의를 배제하는 특약, 즉 실손보상계약 또는 전액보상계약이 가능하다.

비례보상주의는 예전부터 기평가보험(valued policy)을 허용해 온 해상보험에서는 드물지만, 화재보험에서는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보험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그 결과 비례보상이 이루어져서, 피보험자가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 왜 비례보상될 수 밖에 없느냐에 대한 논거를 살펴 보자.

1. 공동보험 이론

비례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구미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공동보험(coinsurance)의 이론이다.

즉, 손해사정 결과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피보험자가 그 초과액에 대한 자가보험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의 일부분(비례분)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론이다. 이와같은 공동보험이론은 일종의 의제설(擬制說)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의 부보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가보험자(his own insurer)가 된다고 하는 점, 그 자체가 의제이지만 엄격히 생각해 보면 그는 결코 보험회사와 같이 보험을 담보하는 하나의 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보험 이론에 의해서는 보험가입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

2. 납입보험료 부족설

다음의 설명은 비례보상주의를 일부보험에 적용시키는 근거를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부족에서 구해 보려는 소위 「납입보험료 부족설」이다.

그 논거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보험자는 그가 담보받은 위험(risk)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가액을 전부보험(1천만원의 보험계약체결)으로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했을 때, 5백만원의 일부보험계약자는 절반인 5천원을 보험료로 보험자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재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가 수취하는 보험금도 비례하여 절반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비례보상주의의 적용은 보험료부족을 벌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보험단체의 입장에서 총체

적으로 볼 때에 보험자가 보험사고 전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전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손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의 총액이 대등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있어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계약이 부보가액에 일치되는 즉, 전부보험이 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물이 일부보험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보험단체의 공동기금의 조성이 불충분하게 되며, 사고발생시에는 당연히 비례해서 보험보호를 받아야만 보험제도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일부보험에 대한 비례보상주의의 적용근거를 납입보험료의 부족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3. 부담의 공평화설

이에 대하여 세번째의 설은 보험가입자간 부담의 불공평을 가지고 비례보상의 논거로 삼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우선 보험이라는 것을 위험부담료 즉, 보험료의 분담을 통하여 개인의 위험부담을 다수의 계약자간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재보험을 보더라도 화재가 반드시 재산의 전손을 가져오게 하

는 것이 아니며, 화재손해의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보험계약자가 그 재산의 평가 즉, 보험가액 전액을 부보하지 않으면 각자의 위험부담의 비율은 극히 불공평하게 된다.

이의 실증적인 자료로서 미국의 메리트위원회(Merritt Committee)가 뉴욕(New York)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 계약자가 보험가액(100불)의 10%에 해당되는 10불만을 모두 부보하고, 이 경우에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전부보상한다면 보험요율이 0.34%라는 높은 요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반하여 모든 계약자가 모두 1백불씩 부보하여 전부보험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화재보험요율이 0.09%의 비율이 된다고 하였다. 보험가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금액으로 계약을 한 일부보험에 대해서는 전부보험(full insurance) 또는 보험가액에 가까운 보험금액을 부보한 계약자에 비하여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일부보험에 대하여는 높은 보험료를 부가하거나 비례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부보험과 일부보험계약간에 형평을 가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보험에 대하여 비례보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동보험이라는 이

론보다는 ① 납입보험료의 부족과 ② 부담의 공평을 기한다는 두가지 관점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III. 비례보상주의의 예외적 적용

화재보험에 있어서 비례보상주의가 이론적인 결함이 없다하더라도 물가상승기에는 일부보험현상이 불가피하게 야기되고 있고, 또 보험마케팅의 관행상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에 전부보험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일부보험이 될 때에는 비례보상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실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영국에서는 일부보험에 대하여도 손해액 전액을 일정조건하에 보상하는 화재보험상품을 발매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Specific policy

영국에서는 주택물건(private property)에 대한 화재보험에 완전한 전액보상방식이 있는데, 이를 Specific Policy라고 부른다. 이는 영국화재보험의 예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보험에 대하여 전통적인 비례보상주의를 배제하고 전액보상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첫째, 보수적인 기질을 가진 영국민들이

비례보상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납득이 힘들다는 점이고, 둘째는 영국에서도 비례보상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쉽지않아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자가 비례보상의 정당성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아예 요율에 반영하고 손해발생시에 전액보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 미국의 Coinsurance

미국의 화재보험은 종래까지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Coinsurance Clause라고 하는 특약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의 일정비율까지 즉, 보험가액의 전액 내지 80% 까지를 부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부보율의 고저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시킴으로써 일부보험이 되지않도록 간접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80%의 Coinsurance에 합의되었을 때에는 부보율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고, 80% 미만의 부보시에는 비례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프랑스의 지수식 화재보험

프랑스국민 역시 비례보상을 혐오하고 있고 인플레이로 인한 일반보험현상을 막기 위하여 물가지수보험을 화재보험에 도입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종류의 보험은 빈번하게 보험금액이 개정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IV.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80%, 그리고 「가정생활보험」은 60%만 부보하면 비례보상을 하지않고 손해액전부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80% Coinsurance 조항을 본딴 것인데, 이와같이 보험의 원리에서 약간 벗어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내화조 건물이 전손을 입는다 해도 잔존물(벽돌 등)이 20% 정도 남아 보상하지 않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생활보험」과 같이 보험가액의 60%만 보험에 들어도 전액을 보상하는 근거는 박약한 것 같다. 비례보상에 관련된 보험가입자의 불평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계약의 전후를 통하여 꾸준히 그 원리를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전액보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